

025,4633

통14

한국표준산업분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호기입용)

1992



통 계 청

B71356

차 례

I. 서 설

1. 산업의 정의 -----	3
2. 한국표준 산업분류의 개념 및 목적 -----	3
3. 주요 개정 내용 -----	4
4. 통계적 분류단위 -----	6
5. 통계단위의 산업 결정 -----	6
6. 산업분류의 적용 원칙 -----	8
7. 신·구 산업분류의 분류 단계별 항목수 비교 -----	9

II.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신·구 대비표 -----	10
---------------------------------	----

III.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구·신 대비표 -----	15
----------------------------------	----

IV. 산업분류표 -----	20
-----------------	----

V. 산업별(대·중분류) 내용 해설 -----	35
---------------------------	----

I. 서 설

1. 산업의 정의

산업이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종류의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모든 생산단위의 집합"을 말한다.

생산적인 경제활동(산업활동)이란 사회적인 분업화에 따라 "각 경제주체가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주된 경제활동"이라 정의한다. 이때 생산적인 경제활동에는 영리적인 사업활동뿐만 아니라 공공행정, 국방, 교육, 종교 및 기타 비영리단체의 활동을 포함하지만 자기 가정내의 가사활동은 제외한다.

2. 한국표준 산업분류의 개념 및 목적

가. 개념

각 생산단위가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생산적인 경제활동의 유형을 결정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모든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 산업분류이며, 각 생산주체의 산업활동에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 제표, 분석 등 각종 통계목적에 모든 통계작성기관이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것이 표준산업분류이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란, "국내 경제활동의 구조분석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생산과 그 생산된 자료간의 국내외 비교 분석 목적에 모든 기관이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국내의 산업구조 및 실태하에서 각 생산단위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산업활동을 일정한 분류기준과 원칙에 따라 일반적인 형태로 유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분류의 목적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요목적은 산업활동에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를 산업활동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고자 할 때 이용될 수 있는 일련의 산업활동유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설정된 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산업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이를 분석함으로써 경제 및 산업구조, 산업간의 유기적 구성 및 상관성 등을 파악, 분석함은 물론 작성된 국내·외 통계자료간의 비교도 가능토록 한 것이다.

3. 주요 개정 내용

가. 분류항목의 세분

- 대분류 항목 : 9개 항목 → 17개 항목
- 중분류 항목 : 36개 항목 → 60개 항목

(※ 제조업 부분의 중분류 : '9개 항목 → 23개 항목'으로 세분)

나. 부호체계의 변동

- 방 식 : 10진법 → 알파벳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혼용하여 5단계 분류
- 대분류 : 알파벳문자 사용(A~Q 17개 항목)
- 중분류 : 01~99의 두단위 숫자를 사용하여 5배수 방식에 의하여 17개 대분류부분에 분할하여 60개 중분류 항목을 순차적으로 분류
- 소, 세, 세세분류 : 10진법 사용

다. 분류내용상의 변화

- 농업용역에 복합농업 신설 (01)
- 신발, 가구제조업을 독립항목으로 각각 신설 (19 및 36)
- 기록매체 복제업(22)을 출판업에 분류
- 재생재료 처리업(37) 신설
- 자기가 구상한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업자에 제공하여 제조케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자기 책임 하에서 판매하는 경우를 도·소매활동으로 보던 것을 제조활동으로 변경
-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활동을 그 작업순서에 따라 유형화함으로써 건설업부분 분류체계 개선
- 건설 및 건물해체 장비임대(조작자 딸린) 활동도 건설업에 포함(45)
- 자동차, 모터사이클에 관련된 모든 활동과 차량용 연료 소매활동을 별도 독립 분류(50)
- 운송 수단별로 분할되었던 운수관련 서비스를 통합하여 별도 독립 항목(63)으로 분류
- 금융리스를 금융업에 신설(65)
- 각종 기계장비 및 개인용품 임대활동을 71에 통합 분류
- 연구 및 개발활동을 사회서비스업에서 사업서비스업(73) 영역으로 변경
- 사진촬영 및 처리활동을 사회서비스업에서 사업서비스업(74) 영역으로 변경
- 건물청소 및 소독, 대리활동을 사회서비스업에서 사업서비스업(74) 영역으로 변경

4. 통계적 분류 단위

통계단위란 통계작성에 필요한 정보가 수립되고 통계가 작성되는 대상이 되는 주체로써 이러한 단위는 동질성, 자료획득 가능성, 자율성의 기준에 의하여 단위가 결정된다. 첫째, 동질성에는 통계단위가 수행하는 경제활동의 동질성과 지역의 동질성이 있으며, 둘째, 자료획득 가능성이란 그들의 활동에 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필요조건이지 통계단위를 설정하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셋째, 자율성이란 각 단위가 그들의 모단위로 부터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시장과 직접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며, 한 소유자에 속한 단위는 완전한 자율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의 특정과정에 관하여 관리자가 택한 결정이 다른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동질성, 자료획득 가능성, 자율성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서로 관련을 갖고 있다. 통계단위는 보고단위와 구분되는 것으로 보고단위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실체를 말하며, 대부분의 경우 사업체가 되나 행정기관이나 회계사무소 등도 될 수 있다. 통계단위는 정보를 구하는 실체로 통계가 궁극적으로 작성되는 단위를 말한다. 이러한 통계단위는 관찰단위와 분석단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관찰단위는 통계가 수집되고 통계가 편제되는 단위를 말하며, 분석단위는 통계인이 분석을 위하여 관찰단위보다 더욱 세분화하거나 통합된 단위로서 기술단위나 생산의 동질성단위 등이 있다.

5. 통계단위의 산업결정

활동 주체의 생산적인 경제활동은 주된 활동, 부차적 활동 및 보조적 활동이 복합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각 단위의 활동분류는 그 단위의

주된 활동 또는 활동범위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때 부차적활동과 보조적활동은 무시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각 단위의 주된 활동은 주로 판매되거나 출하되는 재화 또는 다른 단위나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결정된다. 그 구체적인 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단일 사업체가 산업영역을 달리할 수 있는 두가지 이상의 활동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수행할 경우, 즉 벌목과 제재, 점토채취와 벽돌제조, 합성섬유 생산과 섬유산업 등 수직적으로 결합되는 활동을 수행하거나, 제조한 신발과 구입한 신발의 판매, 빵과자 제조 수평적으로 결합되는 활동을 수행하여 이들 활동을 별도로 분리 파악할 수 없을 경우 그 실제적 분류방법은 주된 최종 산출물이 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따라 분류된다. 예컨대, 벌목한 대부분의 원목을 원목대로 판매하고 일부만 제재하는 경우에는 벌목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나 벌목한 원목을 판매하지 않고 이를 직접 제재하는 경우는 제재업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수직적으로 결합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종업원 및 시설면에서 그 주된 활동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최종단계의 활동에 따라 분류되며, 수평적 결합관계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최종 산출물에 따라 분류된다.

나.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조사시점에서 경영하는 사업과는 관계없이 관찰기간의 총 생산액이 많았던 사업, 즉, 주된 활동에 의하여 분류한다.

다. 단일 사업체의 보조단위는 그 사업체의 일개 부서로 포함하며,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는 중앙보조단위는 별도의 사업체로 처리하고 그 보조되는 사업체중 주된 사업체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외국에 설치된 사업체를 관리하는 국내의 중앙행정부서는 사업서비스업(74)에 분류한다.

6. 산업분류의 적용 원칙

기본 분류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언급된 분류 적용상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 단위는 산출물 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

나. 복합적인 활동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단계(대분류 항목)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 세, 세세분류단계 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자본재의 수리 또는 분해수리를 주로 하는 단위는 그 재화를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항목에 분류된다. 자동차, 이륜자동차의 수선활동은 50에 분류되며, 개인 및 가정용품의 수선활동은 52에,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수리 및 유지활동은 72에 분류한다.

라. 동일단위에서 제조 또는 생산한 재화의 소매활동은 별개활동으로 파악되지 않고, 제조 또는 생산활동 중심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기가 생산한 재화와 구입한 재화를 함께 판매한다면 그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마. " 75: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보장사무" 이외의 다른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은 그 활동의 성질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

7. 신·구 산업분류의 분류단계별 항목수 비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신 분류	17	60	155	332	1,185
구 분류	9	35	89	293	1,047

주) 분류불능 산업 제외

II.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신·구대비표

신 분 류	구 분 류	비 고
A. 농림·수렵업 및 임업	1. 농업, 수렵업, 임업및어업	
01. 농업·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	11. 농업 및 수렵업	
02. 임업, 벌목 및 관련 서비스업	12. 임업	
B. 어업	13. 어업	
05.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서비스업		
C. 광업	2. 광업	
10. 석탄광업	21. 석탄광업	
11. 원유, 천연가스채취 및 관련서비스업	22. 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	
12. 우라늄 및 토륨광업		
13. 금속광업	23. 금속광업	
14. 기타광업 및 채석업	29. 기타광업	
D. 제조업	3. 제조업	
15. 음식료품제조업	31.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16. 담배제조업		
17. 섬유제품제조업	32. 섬유의복 및 가죽산업	

신분류	구분류	비고
18.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9.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제조업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3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포함)	
21. 펄프종이 및 종이 제품제조업	34. 종이 및 종이제품 인쇄 및 출판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 매체제조업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35.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2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3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석유및석탄제품제외)	
27. 제 1차 금속산업	37. 제 1차 금속산업	
28.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계 및 장비제외)	38.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	
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제조업		
30.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제조업		
3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32.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제조업		

신 분 류	구 분 류	비 고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36. 가구 및 기타제조업 37.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39. 기타제조업	
E.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40. 전기·가스 및 증기업 41. 수도사업	4.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41. 전기·가스 및 증기업 42. 수도사업	
F. 건설업 45. 건설업	5. 건설업 51. 종합건설업 52. 전문직별 건설업	
G.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50. 자동차판매, 수리 및 차량연료 소매업 51. 도매 및 상품증개업 52.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선업(자동차제외)	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61. 도매업 62. 소매업	
H.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 및 음식점업	63. 음식 및 숙박업	

신분류	구분류	비고
<p>I. 운수·창고 및 통신업</p> <p>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p> <p>61. 수상운송업</p> <p>62. 항공운송업</p> <p>63.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p> <p>64. 통신업</p>	<p>7. 운수·창고 및 통신업</p> <p>71. 운수 및 창고업</p> <p>72. 통신업</p>	
<p>J. 금융 및 보험업</p> <p>65. 금융업</p> <p>66. 보험 및 연금업</p> <p>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p>	<p>8.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p> <p>81. 금융업</p> <p>82. 보험업</p>	
<p>K.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p> <p>70. 부동산업</p> <p>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p> <p>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p> <p>73. 연구 및 개발업</p> <p>74.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p>	<p>9.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p> <p>83. 부동산업</p> <p>84. 사업서비스업</p>	

신분류	구분류	비고
L.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 보장 행정 7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1. 공공행정 및 국방	
M. 교육서비스업 80. 교육서비스업		
N.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93. 사회서비스업	
O.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90.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91. 회원단체 92.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산업 93. 기타서비스업	92.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94. 오락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P. 가사서비스업 95. 가사서비스업	95. 개인 및 가사 서비스업	
Q.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99. 국제 및 기타 외국 기관	96.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0. 분류 불능 산업 00. 분류 불능 산업	

Ⅲ.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구·신대비표

구 분 류	신 분 류	비 고
<p>1. 농업, 수렵업, 임업및어업</p> <p>11. 농업 및 수렵업</p> <p>12. 임업</p> <p>13. 어업</p>	<p>A. 농림·수렵업 및 임업</p> <p>01. 농업·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p> <p>02. 임업, 벌목 및 관련 서비스업</p> <p>B. 어업</p> <p>05.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서비스업</p>	<p>○ 조경설계 및 조면 활동포함</p> <p>○ 야생버섯, 딸기 및 식용견과채취활동 제외</p> <p>○ 고래이외의수생포 유동물포획개구리 양식 및 포획제외</p>
<p>2. 광업</p> <p>21. 석탄광업</p> <p>22. 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p> <p>23. 금속광업</p> <p>29. 기타광업</p>	<p>C. 광업</p> <p>10. 석탄광업</p> <p>11. 원유, 천연가스채취 및 관련서비스업</p> <p>12. 우라늄 및 토륨광업</p> <p>13. 금속광업</p> <p>14. 기타광업 및 채석업</p>	<p>○ 연탄 및 기타응집 탄생산 포함.</p> <p>○ 석유가스채굴관련 서비스포함</p> <p>○ 토탄채굴 제외</p>
<p>3. 제조업</p> <p>31.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p> <p>32.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p>	<p>D. 제조업</p> <p>15. 음식료품제조업</p> <p>16. 담배제조업</p> <p>17. 섬유제품제조업</p>	<p>○ 음식료품제조, 소매포함</p>

구분류	신분류	비고
	18.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9.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제조업	
3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포함)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34. 종이 및 종이제품 인쇄 및 출판업	21. 펄프종이 및 종이 제품제조업	o 카본지 및 기타 복사지제조 포함
	22. 출판, 인쇄 및 기록 매체제조업	o 영화, 비디오복제 사업용포함.
35.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프라스틱 제조업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3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석유및석탄제품제외)	25. 고무 및 프라스틱 제품제조업	o 플라스틱필름가공 가정용품제조포함
37. 제 1차 금속산업	2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38.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	27. 제 1차 금속산업	o 철강관련결구류 제조
	28.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계 및 장비제외)	
	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제조업	
	30.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제조업	
	3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o 전기식 광고물 제조 포함
	32.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제조업	

구분류	신분류	비고
<p>39. 기타제조업</p>	<p>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p> <p>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p> <p>35. 기타 운송장비제조업</p> <p>36. 가구 및 기타제조업</p> <p>37. 재생재료 가공처리업</p>	<p>0 귀금속제 시계줄 및 부품제조 포함</p> <p>0 오락용 고무보트 제조 포함</p> <p>0 금속, 목재가구포함</p> <p>0 섬유재생재료 가공처리포함</p>
<p>4.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p> <p>41. 전기·가스 및 증기업</p> <p>42. 수도사업</p>	<p>E.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p> <p>40. 전기·가스 및 증기업</p> <p>41. 수도사업</p>	
<p>5. 건설업</p> <p>51. 종합건설업</p> <p>52. 전문직별 건설업</p>	<p>F. 건설업</p> <p>45. 건설업</p>	<p>0 전기공사업 포함</p>
<p>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p> <p>61. 도매업</p> <p>62. 소매업</p>	<p>G.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p> <p>50. 자동차판매, 수리 및 차량연료 소매업</p> <p>51. 도매 및 상품증개업</p> <p>52.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선업(자동차제외)</p>	<p>0 이륜자동차 수리 및 부품판매업포함</p> <p>0 개인가정용품 및 임대제외, 의복 개조, 수리포함</p>
<p>63. 음식 및 숙박업</p>	<p>H. 숙박 및 음식점업</p> <p>55. 숙박 및 음식점업</p>	

구분류	신분류	비고
<p>7. 운수·창고 및 통신업</p> <p>71. 운수 및 창고업</p> <p>72. 통신업</p>	<p>I. 운수·창고 및 통신업</p> <p>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p> <p>61. 수상운송업</p> <p>62. 항공운송업</p> <p>63.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p> <p>64. 통신업</p>	<p>o 여행자보조서비스 포함</p>
<p>8.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p> <p>81. 금융업</p> <p>82. 보험업</p>	<p>J. 금융 및 보험업</p> <p>65. 금융업</p> <p>66. 보험 및 연금업</p> <p>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p>	
<p>9.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p> <p>83. 부동산업</p> <p>84. 사업서비스업</p>	<p>K.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p> <p>70. 부동산업</p> <p>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p> <p>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p> <p>73. 연구 및 개발업</p> <p>74.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p>	<p>o 이륜자동차임대업, 가구 및 가정용기기임대, 개인가정용품임대 포함</p> <p>o 컴퓨터, 계산기, 타자기수리 포함</p> <p>o 연예인, 경기 및 공연물대리업 포함</p>

구분류	신분류	비고
<p>91. 공공행정 및 국방</p> <p>93. 사회서비스업</p> <p>92.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p> <p>94. 오락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p> <p>95. 개인 및 가사 서비스업</p> <p>96.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p> <p>0. 분류 불능 산업</p> <p>00. 분류 불능 산업</p>	<p>L.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 보장 행정</p> <p>7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p> <p>M. 교육서비스업</p> <p>80. 교육서비스업</p> <p>N.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p> <p>8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p> <p>O.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p> <p>90.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p> <p>91. 회원단체</p> <p>92.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산업</p> <p>93. 기타서비스업</p> <p>P. 가사서비스업</p> <p>95. 가사서비스업</p> <p>Q.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p> <p>99. 국제 및 기타 외국 기관</p>	<p>o 유선방송업, 투기장, 서커스포함</p>

N. 산업분류표

분류부호	내 용	분류부호	내 용
A	농업, 수렵업 및 임업		
01	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	02	임업, 벌목 및 관련 서비스업
011	작물생산 및 원예업	020	임업, 벌목 및 관련 서비스업
0111	곡물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작물생산업	0201	영림업
0112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생산업	0202	벌목업
0113	과실, 음료 및 향신작물생산업	0203	임업서비스업
0114	시설작물 생산업		
012	축산업	B.	어업
0121	소, 말 및 양사육업	05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서비스업
0122	기타 축산업	051	일반어업
013	복합농업	0511	일반해면어업
0130	복합농업	0512	일반내수면어업
014	조경, 작물생산 및 축산 관련서비스업	052	양식업 및 어업 관련 서비스업
0141	조경 관련서비스업	0521	양식업
0142	작물생산 관련서비스업	0522	어업관련서비스업
0143	축산 관련서비스업		
015	수렵 및 관련서비스업		
0150	수렵 및 관련서비스업		

분류부호	내 용	분류부호	내 용
C	광 업		
10	석탄광업	142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광업 및 채취업
101	무연탄광업	1421	화학 및 비료원료용 광물
1010	무연탄광업	1422	소금채취업
1020	갈탄광업	1429	기타 광업 및 채석업
1030	토탄광업		
		D	제조업
11	원유, 천연가스채취 및 관련 서비스업	15	음식료품 제조업
111	원유, 천연가스 채취업	151	고기, 과일, 채소 및 유지가공업
112	원유 및 천연가스채취 관련 서비스업	1511	육지동물고기가공 및 저장처리업
1120	원유 및 천연가스채취 관련 서비스업	1512	수산동물가공및저장처리업
12	우라늄 및 토륨광업	1513	과일,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120	우라늄 및 토륨광업	1514	동식물성 유지제조업
1200	우라늄 및 토륨광업	152	낙농품제조업
13	금속광업	1520	낙농품제조업
131	철광업	153	곡물가공품, 전분 및 사료제조업
1310	철광업	1531	곡물가공업
1320	비철금속광업	1532	전분 및 당류제조업
14	기타 광업 및 채석업	1533	조제동물 사료제조업
141	토사석 채취업		
1410	토사석 채취업		

분류부호	내 용	분류부호	내 용
154	기타 식품제조업	172	달리분류되지 않은 방적용 섬유제품제조업
1541	빵 및 곡분과자 제조업	1721	직물제품제조업(의복제외)
1542	설탕제조업	1722	응단 및 유사 마루덧개 제조업
1543	코코아제품 및 설탕과자 제조업	1723	끈, 로프 및 끈가공품 제조업
1544	국수 및 유사식품제조업	1729	기타 방적용 섬유제품 제조업
1545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173	편조업
1548	식료품 임가공업	1730	편조업
15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식료품 제조업	18	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
155	음료제조업	181	의복제조업
1551	증류주 및 합성주제조업	1811	개인 마춤복제조업
1552	발효주제조업	1812	기성복제조업
1553	맥아 및 맥주제조업	182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54	얼음 및 비알콜성음료제조업	1820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60	담배제조업	19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제조업
1600	담배제조업	191	가죽, 가방 및 마구류 제조업
17	섬유제품 제조업	1911	가죽제조업
171	방적, 직조 및 섬유염색, 가공업	1912	가방, 핸드백 및 마구류 제조업
1711	제사 및 방적업		
1712	직조업		
1713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		

분류부호	내 용	분류부호	내 용
192	신발제조업	222	상업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업
1920	신발제조업	2221	상업인쇄업
20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가구제외)	2222	인쇄관련 서비스업
201	제재 및 목재가공업	223	기록매체 복제업
2010	제재 및 목재가공업	2230	기록매체 복제업
202	나무, 콜크 및 조물제품 제조업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2021	단판, 합판 및 판관 나무판 제조업	231	코크스 및 관련제품제조업
2022	건축용 목제품제조업	2310	코크스 및 관련제품제조업
2023	목재용기 제조업	232	석유정제품 제조업
2029	기타 나무 및 콜크제품 제조업	2321	원유정제 처리업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322	석유정제분획물 재처리업
2102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	233	핵연료 가공업
2109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	2330	핵연료 가공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제조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221	출판업	241	기초화합물 제조업
2211	서적 출판업	2411	기초화합물 제조업
2212	신문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2412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업
2213	기록매체 출판업	2413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219	기타 출판업	24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421	살균, 방충제 및 기타농업 화학제품 제조업

분류부호	내 용	분류부호	내 용
2422	도료, 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업	2610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423	의약품,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업	269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424	비누, 세정광택제 및 화장품 제조업	2691	일반도자기 제조업
24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화학 제품 제조업	2692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243	화학섬유 제조업	2693	비내화 구조용 요업제품 제조업
2430	화학섬유 제조업	2694	시멘트, 석회 및 프라스터 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2695	콘크리트, 시멘트 및 프라스터제품 제조업
251	고무제품 제조업	2696	석제품 제조업
2511	고무타이어 및 튜브생산업	26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519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7	제 1차 금속산업
25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71	1차 철강산업
2521	일반성형 제 1차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711	제철 및 제강업
2522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712	철강압연, 압출, 연신 및 제관업
2523	강화플라스틱성형제품제조업	27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철강 산업
2524	제1차 플라스틱가공품제조업	272	1차 비철금속산업
2529	기타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 제조업	2721	비철금속 제 1차 제련 및 정련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722	비철금속 제 2차 제련 및 정련업
26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723	비철금속 압연 및 압출업

분류부호	내 용	분류부호	내 용
2729	기타 1차 비철금속산업	2912	펌프, 압축기, 탭 및 밸브 제조업
273	금속주조업	2913	베어링, 기어 및 구동요소 제조업
2731	철강주조업	2914	산업용 오븐, 로 및 로용 버너제조업
2732	비철금속주조업	2915	산업용 트럭 및 물품취급 장비 제조업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제외)	2919	기타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281	구조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 발생기 제조업	292	특수 목적용 기계제조업
2811	구조금속제품제조업	2921	농업용기계제조업
2812	금속탱크, 저장소 및 유사 용기계제조업	2922	가공 공작기계제조업
2813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923	금속주조 및 압연기계제조업
289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 및 금속처리업	2924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업
2891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 제품 제조업	2925	음식물 및 담배가공기계 제조업
2892	금속처리업	2926	섬유 및 의복용기계제조업
2893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철물 제조업	2927	무기 및 실탄제조업
28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조립 금속제품 제조업	2929	기타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30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정 용 기구제조업
291	일반 목적용 기계제조업	30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제조업
2911	엔진 및 터빈제조업(항공기 및 차량용제외)	3000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제조업
		3001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분류부호	내 용	분류부호	내 용
3002	기타 사무계산 및 회계용 기계제조업	322	통신기기및방송장비제조업
3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 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	3220	통신기기및방송장비제조업
3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 장치 제조업	323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3110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 장치 제조업	3230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312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제조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3120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제조업	331	의료, 측정, 시험 및 기타 정밀기기제조업(광학기기 제외)
313	절연선 및 케이블제조업	3311	의료용기기 제조업
3130	절연선 및 케이블제조업	3312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제조업(산업처리 제어장비제외)
314	축전지 및 일차 전지제조업	3313	산업처리 자동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
3140	축전지 및 일차 전지제조업	332	사진 및 광학기기 제조업
315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3320	사진 및 광학기기 제조업
3150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333	시계제조업
3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 장비 제조업	3330	시계 및 시계부품제조업
319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 장비 제조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4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321	전자관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410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3210	전자관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분류부호	내 용	분류부호	내 용
342	자동차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69	기타제조업
3420	자동차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691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제조업
343	자동차부품 제조업	3692	악기제조업
3430	자동차부품 제조업	3693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694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51	선박, 보트 건조 및 수리업	3695	모조장식품, 장식품 및 교시형 모형제조업
3511	선박 건조 및 수리업	36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조업
3512	오락, 경기용 보트 건조 및 수리업	37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352	철도장비제조업	371	금속재생재료 가공처리업
3520	철도장비제조업	3710	금속재생재료 가공처리업
353	항공기 및 우주선 제조업	372	비금속재생
3530	항공기 및 우주선 제조업	3720	비금속재생재료가공처리업
35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수 장비제조업		
3591	이륜자동차 제조업		
3592	자전거 및 장애자용 차량 제조업		
35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운수장비 제조업		
36	가구 및 기타 제조업		
361	가구 및 기타 제조업		
3610	가구제조업		

분류부호	내 용	분류부호	내 용
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G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50	자동차판매, 수리 및 차량 연료 소매업
401	전기업	501	자동차판매업
402	가스제조 및 공급업	5011	자동차도매업
403	증기 및 온수공급업	5012	자동차소매업
41	수도사업	502	자동차수리업
410	수도사업	5020	자동차수리업
F	건설업	503	자동차부품, 부속품판매업
45	건설업	504	이륜자동차판매 및 수리업
451	지반 조성공사업	505	차량용 연료소매업
452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업	51	도매 및 상품중개업
4521	건물중합건설업	511	상품중개업
4522	토목건설업	512	농축산물,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4523	건축물 축조관련 전문건설업	5121	산업용 농축산물 도매업
453	건물설비설치공사업	5122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454	건축마무리공사업	513	가정용품 도매업
455	건설장비임대업(운전자 딸린)	5131	가정용 섬유제품, 의복 및 신발도매업
		5132	가정용기기, 가구 및 유사 용품 도매업
		5133	의약품 및 의료용품도매업

분류부호	내 용	분류부호	내 용
I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6303	육상운수 유지서비스업
601	도시간 철도운송업	6304	수상운수 유지서비스업
602	기타 육상운송업	6305	해상운수 유지서비스업
6021	정기노선여객 육상운송업	6306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6022	비노선여객 육상운송업	6309	기타 운수관련대리서비스업
6023	도로화물 운송업	64	통신업
603	파이프라인 운송업	641	우편업
61	수상운송업	6411	우편업
611	해상운송업	6412	우편물 송달업
612	내륙수상 운송업	642	전기 통신업
62	항공운송업	J	금융 및 보험업
621	정기항공 운송업	65	금융업
622	부정기 항공기 운행사업	651	통화금융업
63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6511	중앙은행
630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6519	기타 통화금융업
6301	화물취급업	659	기타 금융업
6302	보관 및 창고업	6591	금융리스업
		6592	기타 여신금융업
		65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금융업
		66	보험 및 연금업

분류부호	내 용	분류부호	내 용
660	보험 및 연금업	712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6601	생명보험업	7121	농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6602	연금 및 공제업	7122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6603	비생명보험업	7123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6604	재보험업	71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713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671	금융관련 서비스업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6711	금융시장 관리업	721	컴퓨터설비 자문업
6712	증권거래업	722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672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723	자료처리업
K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724	데이터베이스업
70	부동산업	725	사무, 회계, 계산기기의 유지 및 수리업
701	부동산 임대업	729	기타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7011	부동산 임대업	73	연구 및 개발업
7012	부동산 분양공급업	731	자연과학연구 개발업
702	부동산 관련서비스업	732	인문 및 사회과학연구 개발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		
711	운수장비 임대업		
7111	육상운수 장비임대업		
7112	수상운수 장비임대업		
7113	항공운수 장비임대업		

분류부호	내 용	분류부호	내 용
74	기타 사업 관련서비스업	751	정부행정 및 공공경제사회 정책사무
741	법무, 회계, 시장조사 및 사업경영 상담업	7511	종합공공행정
7411	법무 관련서비스업	7512	사회서비스 사업관리행정
7412	회계 관련서비스업	7513	노동 및 산업진흥행정
74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514	정부기관 일반보조 행정
7414	사업 및 경영상담업	752	외무, 국방 및 치안행정
742	건축공학,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서비스업	7521	외무행정
7421	건축공학,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	7522	국방행정
7422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7523	공공질서 및 치안행정
743	광고업	753	사회보장행정
7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 관련서비스업	M	교육서비스업
7491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80	교육서비스업
7492	탐정 및 경호업	801	초급교육기관
7493	건물 및 기타 사업장 청소업	802	중급교육기관 (중학교, 고등학교)
7494	사진촬영 및 처리업	803	상급교육기관
74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사업 관련서비스업	8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교육 기관
L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류부호	내 용	분류부호	내 용
N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9112	전문가 단체
8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912	노동조합
851	의료업	919	기타 회원단체
8511	병원	9191	종교단체
8512	의원	9192	정치단체
8519	기타 의료업	91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회원단체
852	수의업		
853	사회복지사업	9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8531	수용복지시설	921	영화, 방송 및 기타 공연 관련 산업
8532	비수용복지시설		
0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9211	영화제작 및 배급업
90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9212	영화상영업
900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9213	방송업
9001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9214	연극, 음악 및 기타 예술 관련사업
9002	하수 및 분뇨수거 처리업	92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공연 관련 산업
90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922	뉴스자료 제공업
91	회원단체	923	도서관, 기록보존소, 박물관 및 문화관련 산업
911	산업 및 전문가 단체	9231	도서관, 독서실 및 기록 보존업
9111	산업 및 경영자 단체	9232	박물관 및 사적지관리 운영업

분류부호	내 용	분류부호	내 용
923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보존 관련업		
924	운동, 경기 및 기타 오락 관련 사업		
9241	자영경기인 및 경기후원업		
9242	경기장 운영업		
9243	운동설비 운영업		
9249	기타 오락관련 산업		
93	기타서비스업		
930	기타서비스업		
9301	세탁업		
9302	이용소 및 미용소		
9303	장의사 및 묘지관리업		
93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서비스업		
P	가사 서비스업		
95	가사 서비스업		
Q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99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V. 산업별(대·중분류) 내용 해설

대분류 A. 농업, 수렵업 및 임업

이 대분류에는 농업, 수렵업, 임업 및 관련서비스업이 포함된다.

1. 개요

가. 농업, 수렵업 및 관련 서비스업

여기에는 작물생산업, 축산업, 복합농업, 조경, 작물생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과 수렵업 및 수렵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 1) 작물생산업은 노지 또는 특정 시설내에서 보통작물, 과수 및 향신작물, 채소 및 화훼작물, 공예작물 등의 각종 농작물을 재배·생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임업이외의 수목재배 및 생산활동과 산림용 이외의 양묘 및 종자생산, 버섯재배 및 채취, 콩나물재배, 야생딸기 및 식용견과의 채취활동 등이 포함된다.
- 2) 축산업은 가축, 가금, 꿀벌, 누에 및 기타 육지동물을 사육·번식하고 가치를 증식시키는 활동으로서, 이들 동물로 부터 고기, 젖, 털, 모피, 알, 꿀, 누에고치 등의 동물성 물질을 생산하고, 애완용·실험용으로 판매할 목적 또는 산림보호 및 종족보호를 목적으로 이들의 육지동물을 사육·번식·증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만, 운반·경기 등 특정 활동에 관련된 동물의 사육과 판매장에서 판매에 관련한 사육관리와 판매 목적이 아닌 애완용 동물의 사육관리는 제외한다.
- 3) 복합농업
작물생산 활동과 축산활동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면서 그 중 한편의 전문 비율이 66% 미만으로 운영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 농업관련 서비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정원 및 공원의 조성을 위한 설계, 정원 조성, 식재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조경 및 관련 서비스활동과 작물생산 관련 서비스 및 축산관련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5) 수렵업 및 관련 서비스업

수렵업은 판매를 목적으로 야생의 육지동물, 조류, 뱀, 곤충 등을 사냥, 포획, 채집하는 산업활동과 업조수류를 증식하여 수렵장을 운영하는 수렵관련서비스에 주로 종사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하나, 스포츠 또는 오락성의 사냥활동은 제외한다.

나. 임업 및 관련 서비스업

영림, 산림용 종묘생산, 육림활동, 벌목활동 및 야생임산물 채취활동과 임업관련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주로 구입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조업으로 본다.

나. 주로 자기에서 생산한 생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조업으로 보지 않으나, 별개의 제조공장 등을 설치하고, 그 제조활동에만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상용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리하여 파악한다.

다. 농지개량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원예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농림수산업관련조합은 그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 라. 농업활동의 지도, 조언, 알선, 감독 등과 같은 생산활동에 간접적인 보조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 중 정부기관 및 단체는 (75)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되며, 농장 경영상담 및 관련 서비스는 (74)에 분류된다.
- 마. 농지조성공사, 경지정리공사, 사방공사, 제방공사, 조경토목공사 등의 활동과 건축공사활동에 관련하여 조경설계 및 식재활동이 결합하여 운영되는 경우에는 (45)에 포함된다.
- 바. 식물원, 수목원, 동물원, 수족관의 관리운영 활동은 (92)에 분류된다.
- 사. 풍치도시 설계 서비스는 (74)에 분류된다.
- 아. 휴양림의 관리 운영은 (92)에 분류된다.

중분류 01. 농업, 수렵업 및 관련 서비스업

중분류 02. 임업, 벌목 및 관련 서비스업

산림용 종자의 채취 및 산림용 묘목의 생산, 수목의 식재 및 관리, 야생 임산물을 채취하는 영림활동과 벌목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수행되는 영림 및 벌목활동에 관련된 서비스활동이 포함된다. 또한 산림내에서 자기가 직접 채취한 재료로 숯굽기, 수액의 증류 및 농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는 임산물 생산활동으로 보며, 이러한 활동이 영림업자와의 계약 및 수수료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에는 영림 관련 서비스업으로 본다. 수액 및 수목의 채취활동과 연관되지 않은 수액의 증류, 농축 및 숯굽기 활동은 제조업에 분류된다.

— < 제 외 > —

- 천연 고무나무의 재배 (01)
- 식용견과 또는 딸기생산 활동 (01)
- 벚꽃, 송로외의 재배·채취 (01)
- 수목원, 식물원 및 야생식물 보호 관리 서비스 (92)
- 휴양림의 관리, 운영 (92)

대분류 B. 어업

이 대분류에는 일반어업, 양식업 및 어업 관련서비스업이 포함된다.

1. 개요

가. 일반어업

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생식하고 있는 수산 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 양식업

해면이나 내수면에서 인공적으로 수산 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 어업관련 서비스업

일반어업 또는 양식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일반어업 및 양식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직접적으로 포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물을 직접 가공할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지 않으나, 어업활동을 하지 않고 가공활동에만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상용종사자가 있고, 가공활동단위만을 별도로 분류 파악할 수 있는 경우와 공장형태의 가공선박을 별도 독립된 사업체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들만을 제조업에 분류한다.

나. 개구리양식 활동은 축산업에 분류된다.

다. 고래이외의 수생포유동물 및 개구리 포획은 수렵업에 분류된다.

라. 어망제조 및 수리활동은 제조업에 분류된다.

마. 어선 및 낚시용 보트 수리활동은 선박제조 및 수리업에 분류된다.

바. 스포츠 또는 오락적 낚시장 관련시설 운영활동은 오락서비스업에 분류된다.

중분류 05.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판매를 목적으로 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선박 및 어도구 등으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생동식물을 채취·채포·포획하거나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활동을 말한다. 어업활동에 결합된 수산물 가공선박의 운영은 별도 독립된 사업체로 파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된다.

대분류 C. 광업

1. 광업의 개념

광업은 유기물 또는 무기물을 불문하고, 지하 및 지표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채취·추출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이들의 손질 및 품질개선 활동을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석탄, 원유, 천연가스 및 기타 비금속광물채굴과 금속광물의 탐사, 광산개발, 시굴, 채굴 및 추출활동, 그리고 광업활동에 통상적으로 결합되어 수행되는 마쇄, 파쇄, 체질, 선별, 부유, 용해, 원유 토핑 등 그 광물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한 준비활동, 손질 및 품질개선 활동 등을 말한다. 광업활동은 생산되는 주요 광물의 종류에 따라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로 산업을 각각 분류한다. 광업사업체는 광산단위로 분류하며, 관리사무소의 주소지가 사업장소가 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 가. 썸 및 광천에서 천연생수 및 광천수의 포장활동 (15)
- 나. 채광, 채석활동에 결합되지 않고 수행되는 토사석, 암석 및 특정광물의 분쇄, 마쇄 또는 기타 처리활동 (26)
- 다. 상수도, 공업용수의 집수, 정수 및 배수활동 (41)
- 라.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광업권의 개발 및 정지활동 (45)
- 마.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광물탐사 및 지질조사 활동 (74)

중분류 10. 석탄광업

무연탄, 유연탄, 갈탄 및 토탄 등의 석탄을 채굴 및 응집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하여 품질을 개선하거나 파쇄·분쇄·체질 및 선별을 주로하는 사업체는 채광활동과의 결합여부를

불문하고 여기에 분류되며, 구입 또는 직접 채굴한 석탄으로 연탄 및 기타 응집탄을 생산하거나, 채광업체가 채광장에서 직접 석탄가스를 생산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 < 제 외 > —

- 구입한 석탄을 건류하여 코크스 및 기체연료 생산 (23)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광업권의 개발 및 준비작업 (45)

중분류 11. 원유, 천연가스채취 및 관련 서비스업

여기에는 원유 및 천연가스의 채굴활동과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원유 및 가스 추출활동에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중분류 12. 우라늄 및 토륨광업

역청 우라늄광을 포함하여 우라늄 또는 토륨을 주로 함유한 광물의 채굴 및 이들의 정광활동을 말한다.

— < 포 함 > —

- 우라늄광 채굴과 그 정광활동
- 토륨광 채굴과 그 정광활동

— < 제 외 > —

- 회토류 금속광석의 채굴활동 (13)
- 방사성 또는 핵연료용 물질의 생산 (23)
- 역청 우라늄광 또는 우라늄 함유 광석으로부터 우라늄 금속을 추출하는 활동 (23)

중분류 13. 금속광업

철 및 비철금속을 함유한 금속광의 탐사·개발·채굴을 주로 하는 산업 활동으로서 채광활동과의 결합여부를 불문하고, 통상적으로 채광활동에 부수되어 수행되는 광석의 파쇄·마쇄·자성 및 중력에 의한 분리·선별·세질·부유·분말의 응집처리(입상, 구형상, 원통상 등)·건조·배소·자화 또는 산화하기 위한 하소(열처리) 등과 같이 기본적인 화학적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행되는 금속광물의 정광처리활동이 포함된다. 예외적으로 기본적인 화학적 구조를 변경시킬 수 있는 하소 및 배소처리 같은 정광활동도 포함된다.

< 제 외 >

· 우라늄 및 토륨광의 채굴 (12)

중분류 14. 기타 광업 및 채석업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를 제외한 비금속광물의 탐사·개발·채굴·채취활동과 이에 관련된 보조적인 산업활동을 말한다.

대분류 D. 제조업

이 대분류에는 각종 재료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모든 사업체가 분류된다.

1.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수행될 수 있으며, 동력기계를 사용하거나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한 제품은 도매 또는 소매형태로 판매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2. 원재료 및 생산품의 유통

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원재료는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광물 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중간제품 또는 반제품)이 원재료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제련 등은 동선 제조용 원재료가 되며, 동선은 전기용품 제조용의 원재료가 된다. 이러한 원재료는 생산자로 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관습적인 구매계통 및 시장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으며, 또한 동일 소유권하에 있는 한 사업체에서 다른 사업체로 생산품을 이전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제조업체의 생산은 가정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도매시장, 공장간 이동, 산업 사용자의 주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3. 타산업과의 관계

- 가. 구입한 기계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교량, 물탱크, 저장 및 창고설비,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연판, 살수기, 중앙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및 전기배선 등과 같은 건물조직 또는 각종 구조물의 규격부품 및 구성품을 건물이나 건축용지 위에 조립설치하는 산업활동은 (45)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 나.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또는 기타 사업체에 기계 및 장비의 조립 또는 설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체는 그 설치 또는 조립하는 품목을 제조하는 산업과 같은 항목에 분류된다.
- 다.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에 주로 종사하는 사업체가 상품의 판매에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그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에 분류된다.
- 라. 공업용, 상업용 및 유사 기계 및 장비의 유지·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체는 일반적으로 그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사업체와 같은 항목에 분류한다. 그러나 컴퓨터 및 사무용 장비의 유지 및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는 (72)에 분류된다.
- 마. 가정용 기기 및 장비, 가정용품, 자동차 및 기타 소비자용품의 수리를 주로 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은 수리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50) 또는 (52)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된다.
- 바. 각종 상품을 본질적으로 개조·혁신 또는 재생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으로 본다.

- 사. 기계 및 장비의 전용 구성품, 부속품, 부착물 및 부품을 주로 조립제조하는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그 구성품, 부속품, 부품이 사용될 기계 및 장비의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에 분류한다. 그러나 금속의 주조·단조·압형 및 분말야금 방법이나 고무, 플라스틱의 사출이나 성형에 의하여 제조되는 구성품, 부품의 제조는 그 재료 또는 가공·성형 기술에 따라 각각 분류된다.
- 아. 엔진, 피스톤, 전기모터, 전기조립품, 밸브, 기어, 롤러베어링 등과 같은 기계장비의 일반(비전용성) 구성품 및 부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이 제품들이 장착 또는 부착되는 기계나 장비에 관계없이, 이들 구성품 및 부품의 종류에 따라 해당영역에 분류된다.
- 자. 인쇄, 출판 및 인쇄 관련 서비스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 차. 자기가 직접 생산한 농림 및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직접 가공하는 경우로서 그 제조활동만을 별개 사업체로 분리할 수 없을 때에는 제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카. 특정제품 제조용 기계 및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타인 또는 타사업체와의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 활동은 특정 항목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조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조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 타.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네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 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파. 연탄 및 기타 응집탄의 생산활동은 석탄의 채굴활동과의 결합여부를 불문하고 석탄광업에 포함된다.

중분류 15. 음식료품 제조업

이 중분류에는 사람 또는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각종 음식료품 및 식품 재료, 식용 및 비식용 동식물성 유지, 동물성 사료 및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산지에서 시장에 출하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농림·수산물(농·수산물)의 선별·세척·정리활동은 제조할 경우 그 제조활동만을 별도로 분리 파악할 수 없을 때에는 제조업에 분류되지 않으나, 그 제조활동 단위만을 별도로 분리 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가공단위 활동만을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중분류 16. 담배제조업

〈 포 함 〉

· 담배건조장 운영, 담배재 건조, 담배엑스제조, 담배대용품제조

〈 제 외 〉

· 담배재배 농가에서 생산한 잎담배를 직접 건조할 경우 (01)
 · 담배 필터제조 (36)

중분류 17. 섬유제품 제조업

이 중분류에는 다음과 같은 제조활동이 포함된다.

1. 섬유를 가공하여 생사 및 각종 섬유사, 연사, 끈, 로프, 망 및 기타끈제품 제조
2. 각종 섬유사로 광폭직물, 세폭직물, 편조원단 및 그 제품, 카펫 등의 직물 및 편조물 제조
3. 각종 섬유사, 직물, 편조물 및 직물제품의 염색, 표백 및 가공 정리활동
4. 의복과 신발을 제외한 직물제품 제조
5. 직물에 도포, 삼투, 경포, 방수 및 기타 가공직물 제조
6. 펠프, 부직포, 충전 솜 및 기타 섬유제품 제조

이러한 제조활동은 자기소유의 재료로 자기제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재료의 제공 여부를 불문하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주문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 외 >

- 조면, 섬유용 식물의 수침처리 및 기타 농업, 축산활동에 결합 또는 부수되어 수행되는 섬유물질 처리활동은 (01)에 분류된다.
-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가죽가공 및 가죽제품, 의복, 신발제조 (18 또는 19)
- 방적용 원료상태의 합성 및 재생섬유 제조 활동 (24)
- 유리섬유, 사 및 비직조 유리섬유 제품, 광물섬유 및 그 제품제조 활동은 (27)에 분류되나, 유리직물 직조와 유리직물 제품 제조는 여기에 포함된다.
- 독립된 재생 섬유재료의 가공처리 활동 (37)

중분류 18.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중분류 19.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제조업

중분류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이 중분류에는 나무등 또는 대나무, 버드나무 및 갈대 등의 각종 나무 물질을 주원료로 한 제재목, 건축용 조립구조물, 단판 및 합판, 목재처리 및 가공, 목재용기, 콜크제품, 목재도구 및 장비 등과 같은 각종 나무제품과 나무제품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 제 외 >

- 벌목과 벌목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전주, 말뚝 및 기타 목재의 절단과 거칠게 다듬는 활동만을 주로 할 경우 (02)
- 목재가구 제조 (36)
- 목재 악기 및 부분품, 완구, 오락 및 경기용 기구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36)
- 건설활동과 결합되는 목공활동 (45)

중분류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이 중분류에는 나무, 님마, 폐지 및 기타 섬유물질로 펄프를 제조하거나, 펄프로 종이 및 판지를 제조하는 활동과 종이를 재가공한 가공지, 종이용지와 기타 펄프, 종이 및 판지의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분류된다.

중분류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여기에는 서적, 신문, 정기간행물, 기록매체, 기타간행물의 출판, 상업 인쇄 및 인쇄 관련 보조활동, 기록매체의 복제생산 활동이 포함된다.

중분류 23.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석탄을 처리하여 코크스 및 관련 생산품을 생산하거나 원유, 역청광물 및 이들의 분획물을 정제 또는 처리하는 활동과 우라늄금속을 추출하거나 핵연료를 가공하는 산업활동이 분류된다.

< 제 외 >

- 나프타 분리 및 콜타르 증류 활동 (24)
- 도시가스, 수성가스, 발생로가스 및 기타 제조가스 생산활동 (40)
- 연탄 및 기타 석탄 응집연료 생산 (10)

중분류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이 중분류에는 화학적 처리를 주 제조과정으로 하는 산업활동과 화학적 처리과정에서 생성된 제품을 혼합 및 기타 최종 처리하여 단일·혼합·화합 등 복합화합물 또는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주로 다음과 같은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1. 산, 알칼리, 염, 기타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 등의 산업용 기초 화합물제조
2.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

3. 더 가공이 요구되는 원료상태의 합성고무, 플라스틱 물질, 화학섬유 등의
중간 화합물 제조
4. 살충제 및 기타 농업용 화학제품, 도료 및 잉크, 의약품 및 의료용 화합물
비누 및 화장품 등 특정 목적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가공된 달리 분류
되지 않은 화학제품 제조

〈 제 외 〉

- 동물성 유지, 베이킹 파우더 및 기타 식용 발효제품 제조 (15)
- 핵연료, 원유 정제품 및 코크스로 제품 제조 (23)
- 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성형 가공 (25)

중분류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구입한 고무 또는 플라스틱 재료를 사출, 압출·성형 및 기타 가공하여
각종 형태의 1차제품, 적층판 및 기타 단순 가공품, 가정용, 산업용 또
는 기타용의 반제품 및 완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중분류 2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이 중분류에는 돌, 모래, 점토형태의 각종 비금속광물을 원료로 유리 및
유리제품, 비구조용 비내화 도자기제품, 구조용 비내화 점토제품, 내화
요업제품, 시멘트, 석회 및 암면제품과 관련제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
동을 말한다.

〈 제 외 〉

- 석재절단 및 토사석 분쇄 처리활동의 토사석 채취활동과 결합되어 수행될 경우 (14)
- 법랑제품 제조 (28)

중분류 27. 제 1차 금속산업

고로, 전로, 압연 및 가공설비를 갖추고 각종 금속판, 금속스크랩 또는 찌꺼기를 제련 및 정련·용해·합금처리·주조·압출·압연 및 연신·금속표면처리 및 기타 처리하여 각종 1차 형태의 금속반성품 및 주물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중분류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제외)

각종 조립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유사 저장용기, 증기발생기 및 증양난방용 보일러, 금속압단제품 및 분말야금제품제조와 금속 임가공 처리업,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 철물 금속파스너 및 철선제품, 가정용 금속제품 및 기타조립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 제 외 〉

- 기계 및 장비 제조 (29~35)
- 가구 제조 (36)
- 귀금속제품 제조 (36)

중분류 29. 달리 분류 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중분류 30.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자동자료처리 장비(컴퓨터) 및 그 주변장치를 포함하여 등사기, 주소 인쇄기 및 사무실용 인쇄기, 수동 또는 전동 타자기와 자동 타자기, 사진복사기, 수지식 또는 탁상용 전자계산기 및 기타 계산기, 회계기, 현금 등록기, 우편요금 계산기, 표발행기 및 기타 계산장치가 결합 또는 결합되지 않은 유사한 기계, 동전의 분류·포장 및 계산기, 현금 자동 인출기, 봉투 투입기, 연필 깎는 기계, 천공 또는 스테플링기 및 기타 사무용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제 외 >

- 일반 저울 제조 (29)
- 계산기용 전자부품 제조 (32)
- 전자식 게임용 기계장비 제조 (36)
- 사무, 계산 및 회계기계 유지·보수활동 (72)

중분류 3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중분류 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방송장비, 유선전신 또는 전화용 기기, 방송수신기 및 관련 기기, 영상 또는 음성기록 및 재생기, 음성증폭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 제 외 >

- 엑스선관 제조 (33)

중분류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중분류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중분류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중분류 36. 가구 및 기타 제조업

중분류 37.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특정제품 제조용 원료로 그 공정에 직접 투입하기에는 부적합한 상태의 금속 또는 비금속 폐품, 스크랩 또는 특정제품을 기계적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특정제품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 사용하기에 적합한 일정형의 원료상태로 전환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산업에서 투입물 또는 생산물의 특성은 모두 폐품 및 스크랩상태의 것이며, 만약 특정제품을 제조하는 특정 사업체 또는 경영 단위내의 일개 부서에서 이러한 산업활동이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경영단위의 전체활동을 종합적으로 보아 그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산업항목에 분류하여야 한다.

< 제 의 >

- 중고품의 판매는 (50), (51) 또는 (52)에 각각 분류
- 폐품 및 기타 재생재료의 수집 및 관련 처리 활동 (51)
- 폐품 및 기타 재생재료를 처리하여 특정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는 그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산업영역에 각각 분류

대분류 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이 대분류에는 전력의 발전, 송·배전사업, 가스제조 및 공급사업, 증기, 온수의 생산 및 공급사업, 상수도 및 산업용수의 집수, 정수 및 공급사업이 포함된다.

1. 개요

o 전기업

각종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는 송·배전 활동 및 이에 관련된 산업활동을 말한다.

o 가스제조 및 공급업

연료용 및 난방용 제조가스 또는 혼합가스의 생산활동과 생산 또는 구입된 가스의 배관공급 및 정압 저장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o 증기 및 온수 공급업

난방, 동력 또는 기타 목적용의 열, 증기, 온수를 생산하는 활동과 이들을 배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o 수도사업

개인, 가정 및 사업체에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취수, 집수, 정수 및 급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동일 기업체에서 사용되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된 자가발전소가 동일 기업체에서 사용하는 전기량보다 많은 양을 가정 및 타사업체에 판매하는 경우로서, 별도 파악이 가능하다면 발전업에 분류

- 나. 정유공장에서의 가스생산 활동 (23)
- 다. 판매시설의 운영 활동 (01)
- 라. 하수시설의 운영 활동 (90)
- 마. 차량용 가스충전소 활동 (50)
- 바. 가스충전 공급업 (도매) (51)
- 사. 충전된 가스 공급업 (소매) (52)

중분류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중분류 41. 수도사업

수요자에게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취수, 집수, 정수 및 급수를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포 함 〉

- 취수장
- 정수장
- 공업용 수도사업
- 해수의 정수처리장 운영
-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관리사무소

〈 제 외 〉

- 농업용 판매시설 운영 (01)
- 천연광천수 및 천연음료수 병포장 공급 (15)
- 하수시설 운영 (90)

대분류 F. 건설업

1. 개 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각종 건설재료로 각종 건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주로 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또는 구축물을 용지위에 설치하는 활동, 도급종합 건설업자 또는 자영건설업자에 의한 건물건설활동, 도급활동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한 토목공사 및 관련 구축물 설치공사, 조립식건물의 설치공사와 기타 전문건설업자에 의한 각종 전문건설 활동이 포함된다.

o 도급 종합건설업

자기 책임하에서 설계된 종합건설사업 계획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주공사를 직접 또는 전문건설업체와의 재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o 도급 전문건설업

도급 종합건설업자와의 재도급 계약 또는 특정 토목공사 발주자, 건물 및 구축물 등의 소유자와 직접계약에 의하여 토목공사 또는 종합건물 건설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공사활동중 특수 전문기술 또는 장비가 요구되는 특정 전문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o 자영건설업

판매를 위한 건물을 자기계정에 의하여 직접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동일기업을 위한 건설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기업의 일개 부서로서 별도로 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 가. 계약에 의한 조경설계, 정원조성 및 유지관리 활동 (01)
- 나. 계약에 의한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에 직접 관련된 건설 활동 (11)
- 다. 계약에 의하여 원유 및 천연가스 이외의 광업권 개발 또는 채굴준비 공사활동 (45)
- 라. 계약에 의한 광산지역에 건물, 도로 및 기타 구축물의 설치공사는 건설업에 분류
- 마. 조립식 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보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별개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들을 건설업으로 분류
- 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건축설계, 감리, 기획, 조사, 측량 및 기타 건축공학 관련 서비스 제공 (74)
- 사. 건축물 이외의 부동산(토지, 광업권 등)을 직접 개발하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건물을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건설업자에 의뢰하여 건물을 건설케 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 (70)
- 아. 선박 해체업 (35)

중분류 45. 건설업

대분류 G.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이 대분류에는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도·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구매자와 판매자를 대리하여 상품판매 또는 구매하는 상품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과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기타 개인가정용품 등 소비자용품의 수리활동이 포함된다.

중분류 50. 자동차 판매, 수리 및 차량연료 소매업

신품 또는 중고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도·소매, 유지 및 수리활동과 이들의 부품 및 부속품을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자동차 매매 및 중개, 자동차 세차 및 광택처리 활동과 차량용 또는 보트용 연료, 윤활유, 냉각제의 소매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 제 외 〉

- 운전자가 딸린 승용 차량, 트럭의 임대는 (60)에 분류
- 차량 견인 활동 (60)
- 운전자 없이 자동차, 이륜자동차 설사용 차량의 임대 (71)

중분류 5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 개 념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 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개인이나 사업자가 상품을 팔거나 구입하고자 할 때 이러한 매매에 관련된 중개 또는 대리활동이 포함된다.

도매업에 관련하여 대량의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합·분류·선별·분할·재포장·병에 소량으로 분할포장·보관·냉장 및 배달과 설치 서비스 등이 부수될 수 있으며, 고객에게 판매 장려활동을 하거나, 상표등을 부착할 수 있다.

2. 형 태

가. 도매업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특정 상품 또는 각종 상품을 도매하는 도매업자 또는 도매상과 산업체, 상업단체, 기관, 전문 사용자 등에 상품을 공급해 주는 산업공급자 및 이동공급자, 수출업자, 수입업자, 상품집하장, 공동구매조합, 폐품수집상 등이 있다. 광업 및 제조업체에서 운영하는 별개의 도매사업소 또는 도매지부도 포함되나, 주문만 받고 제품의 출하는 공장이나 광산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상품 중개업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상품을 판매 또는 구매를 중개하는 상품중개인, 수탁 및 대리판매인, 대리구매 및 대리수집상, 무역중개인, 농산물 공동판매조합 등이 있다.

3. 타산업과의 관계

가.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설비용 차량의 부품 및 부속품의 판매·수리, 개인, 가정 및 차량소비용 연료를 판매하는 주유소 또는 차량용 가스충전소는 (50)에 분류된다.

나. 배관에 의한 가스, 상수도 공급·판매는 (대분류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에 분류한다.

- 다. 도매업에 주로 종사하는 사업체가 상품판매에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그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주된 활동에 따라 도매업에 분류된다.
- 라. 자기가 직접 기획한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자기 계정에 의하여 구입한 원재료를 다른 제조업자에게 제공하여 상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토록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하에서 직접 판매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 마. 산업기계 및 장비, 건축자재 판매 및 기타 산업용품의 판매와 상업 및 기타 산업사용자에게 각종 상품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은 도매업으로 본다. 다만, 사무용 기계장비, 목재, 페인트, 벽지, 종자, 농약 등은 산업용품일지라도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판매장을 개설하고 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분할 또는 소량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소매업으로 본다.
- 바. 현금거래 또는 선물 거래 방식에 의하여 예약된 미래상품의 공급·증개하는 상품교환 활동은 (67)에 분류된다.
- 사. 재생재료 및 기타 제품의 해체 또는 재생처리 활동은 (37)에 분류된다.

중분류 52. 소매 및 소비용품 수산업 (자동차제외)

1. 개요

구입한 상품(신품,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백화점, 점포, 노점, 우편주문 판매소, 소비조합, 행상인, 시음장 등에서 개인, 가정 및 소비자용품을 일반대중에게 재판매하는 활동과 개인, 가정 또는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소비용 물품의 수리활동이 분류된다. 대체적으로 소매상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판매하고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계약(위탁)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소유자를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 가. 소매업분야에서 판매된 상품을 소비재라고 일컬어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식물, 광물, 원유, 산업용 화학물, 철강 및 산업용 기계장비 등의 판매는 소매업으로 보지 않고 도매업으로 본다.
- 나. 타이프라이터, 문구류, 페인트 또는 목재 등은 산업용품일지라도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으로 본다.
- 다. 상품판매에 관련하여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환시키지 않은 처리활동이 부수될 수 있다.
- 라. 또한 이 산업분야에는 소매활동에 결합되어 수행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개인 및 가정용품의 수리 및 설치활동이 포함된다.

2. 소매업의 형태

가. 종합 소매업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 일반 소매업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특정 상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여기에는 특정 신상품 일반소매업과 특정 중고품 일반 소매업이 포함된다.

다. 특수 소매업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통신판매, 노점, 이동판매, 자동판매기 및 기타 매장이외의 판매 방법에 의하여 각종 특정 상품 또는 종합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 타산업과의 관계

- 가. 농가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농업에 분류
- 나. 개인 또는 가정소비를 위하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특정제품(식품, 커튼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제조가 판매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은 제조활동(15~37)으로 분류된다.
- 다. 자동차, 이륜자동차, 설상용 차량 및 그 부분품 판매(도·소매)와 차량연료 소매(50)
- 라. 자동차 또는 기타 상품을 단체 및 산업 사용자에게만 판매할 경우(50 또는 51)에 각각 분류
- 마. 구내소비를 위하여 식품을 판매할 경우(55)
- 바. 일반 대중에게 개인 및 가정용품을 임대하는 경우(71)

대분류 H. 숙박 및 음식점업

1. 개 요

이 대분류에는 숙박업과 음식점업이 포함된다.

가. 숙박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일반 대중 또는 특정 회원에게 각종 형태의 단기적 숙박시설, 캠프장 및 캠핑시설 등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숙박업에 결합·운영되는 음식제공설비와 별도의 독립된 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침대차의 운영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나. 음식점업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에서 또는 특정 장소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리된 음식품 또는 직접 조리한 음식품을 제공·조달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각종 음식점, 직접 소비용 음식물을 출장조리 또는 조달활동과 독립적인 식당차의 운영활동 등이 포함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도시락 및 기타 유사 조리식품 제조 (15)

나. 자동판매기에 의한 음식품의 판매활동 (52)

다. 철도 운수사업체에서 운수활동에 결합된 침대차 또는 식당차의 운영(60)

라. 장기적인 숙박설비의 임대활동 (70)

중분류 55. 숙박 및 음식점업

대분류 I. 운수, 창고 및 통신업

1. 개 요

이 대분류에는 각종 운수시설에 의한 여객 및 화물운송 활동과 창고 및 기타 운수 관련서비스 및 통신활동이 포함된다.

o 운수업

일반 대중이나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철도, 도로, 수상 및 항공운수시설에 의하여 일정노선 유무를 불문하고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과 터미널시설 제공, 화물운송 대리, 여행알선, 화물창고 운영 등의 운수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o 통신업

일반 대중이나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국내외에 송달되는 우편물 및 우편화물의 접수, 운반, 배달하는 우편사업과 전신·전화 및 기타 통신시설에 의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 전달요소를 전기식 또는 전자식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전기통신업이 분류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특정 산업활동에 결합된 운송활동은 그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되나, 동일 기업체를 위한 장거리 운송, 하역, 육상운수, 파이프라인 운송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운수업에 분류된다.

나.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 또는 스튜디오 (92)

다.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설상용 차량을 제외한 운수장비의 수리 및 개조 활동 (35)

라. 도로, 철도, 항구, 비행장 등의 건설, 유지·수선활동 (45)

마.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설상용 차량의 유지·수리활동은 (50)에 분류

바. 운전자 또는 조작자 없이 운수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운수장비의 종류에 따라 (71)에 분류된다.

중분류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중분류 61. 수상운송업

노선 또는 정기여부를 불문하고 여객 또는 화물을 수상운송설비에 의하여 운송하는 활동으로서 견인보트, 관광 또는 순항보트, 유람선 또는 관광선, 수상택시 등의 운영활동이 포함된다.

< 제 외 >

- 선상에서 독립적으로 음식점 및 주점운영 활동은 (55)에 분류되나, 운송활동에 결합·운영되는 경우는 운송업에 분류된다.
- 화물의 적재 및 하역, 보관, 부두운영과 도킹, 수로안내(도선), 선박구난 활동 및 구난선 운영 등의 기타 수상운송 보조활동은 (63)항목에 분류된다.

중분류 62. 항공 운송업

항공기 또는 우주선 등에 의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제 외 > —

- 항공기 또는 항공기 엔진의 분해·수리활동 (35)
- 우편물 항공 운송 활동 (64)

중분류 63. 여행알선 및 운수 관련서비스업

각종 화물취급, 보관 및 창고시설운영, 운수사업 유지서비스, 여행알선 및 대리서비스, 운수 관련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제 외 > —

- 운전자 알선 및 대리 (74)
- 승용차 임대, 운전자 없이 (71)

중분류 64. 통신업

대분류 J. 금융 및 보험업

1. 개 요

이 대분류에는 금융, 보험, 연금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보장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분배, 공급 및 중개하는 금융업, 보험업 및 연금업, 금융 또는 보험 관련서비스업이 포함된다.

o 금융업

보험 및 연금목적 이외의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분배, 공급 및 중개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각종 금융기관의 본점, 지점, 영업소의 활동이 포함된다.

o 보험 및 연금업

장·단기에 발생할 수 있는 생명 또는 비생명사고의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보험업과 노후 또는 퇴직후의 장기소득 보장기금을 조성·관리하는 연금업이 포함된다.

o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

그 자체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은 아니지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 및 연금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각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활동을 말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 o 정부이전 지출에 의하여 생활 무능력자, 소득결손 또는 손실 등을 보상하는 사회보장업무(75)
- o 운용리스 활동 (71)
- o 특정 사업목적 기금조성과 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

중분류 65. 금융업

보험 또는 연금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분배, 공급 및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중분류 66. 보험 및 연금업

저축요소의 유무에 관계없이 장·단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하는 보험 또는 연금기금을 모금,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중분류 67.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

그 자체가 금융 또는 보험활동은 아니지만 금융 또는 보험 및 연금활동에 밀접히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대분류 K.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1. 개 요

이 대분류에는 부동산업, 조작자없이 각종 기계장비 및 개인 또는 가정용품 임대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 산업, 연구개발 및 기타 사업서비스업이 포함된다.

o 부동산업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건물, 토지, 묘지 및 기타 부동산의 운영 및 임대, 구매, 판매 등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o 임대업

개인, 가정 또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작자없이 각종 기계, 장비를 임대하거나 개인 및 가정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o 컴퓨터 관련 산업, 연구개발 및 기타 사업서비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컴퓨터설비조직 자문, 프로그램 개발 및 자문, 자료처리, 데이터베이스 등 컴퓨터운용 관련서비스, 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및 공학분야에 대한 연구 및 개발 활동, 법무, 회계, 시장조사 및 사업경영상담서비스, 건축, 토목공학,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관련 서비스, 광고 및 기타 각종 일반사업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o 자기계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 (45)

o 숙박시설의 운영 (55)

o 조작자가 딸린 각종 운수장비의 임대 (60~62)

o 조작자가 딸린 각종 기계장비 임대는 그 기계장비의 용도에 따라 적합한 산업영역에 분류

- 컴퓨터 판매 및 관련 부수 활동 (51 또는 52)
- 도서관, 독서실 및 기타 자료실 운영 (92)
- 농업, 운수, 금융, 보험 등 특정 산업관련 전문서비스 제공활동은 그 특정 산업분야에 각각 분류

중분류 70. 부동산업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묘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활동 및 아파트식 호텔, 이동주택의 운영활동이 포함된다.

중분류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여기에서 임대라함은 리스활동을 포함하며 유지관리 활동의 결합여부를 불문한다.

중분류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

중분류 73. 연구 및 개발업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유형의 활동이 분류된다.

1. 기초연구 : 특정용도나 응용을 고려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수행되는 기본적 탐구활동
2. 응용연구 : 원칙적으로 명확한 실행목적 또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관련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되는 기본적 탐구활동

3. 실험개발 : 연구 또는 실제적 경험에서 얻어진 기존의 지식에 의하여 구도되는 조직화 작업으로서 새로운 재료, 생산품 및 장치를 생산하고 새로운 공정, 조직 및 업무를 설정하기 위하여 기존에 생산 또는 설치된 것들을 본질적으로 개량하려는 활동

〈 제 외 〉

- 자연과학 또는 사회과학의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행정 및 지원 활동은 (75)항목에 분류
- 응용연구 및 실험개발에 관련된 국방행정 및 지원 활동 (75)
- 교육활동에 결합된 연구활동은 (80)항목에 분류

중분류 74. 기타 사업 관련서비스업

여기에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법무, 회계, 시장조사 및 사업경영 상담서비스, 건축,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 관련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탐정 및 경호 또는 건물청소, 사진촬영 및 처리, 제품포장, 사무 관련서비스,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관련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 제 외 〉

-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 (조작자 없이) (71)
- 컴퓨터 운용 관련서비스 제공 (72)
- 연구 및 개발 (73)
- 뉴스 공급 (92)

대분류 L.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 개 요

국가 및 공공기관이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업무가 포함된다.

o 공공행정 및 국방

입법, 사법, 행정부서를 포함한 중앙 및 지방정부기관이 수행하는 입법사무, 통치행정, 중앙정보 또는 지방행정의 종합 집행사무 등의 종합 공공사무, 노동, 보건, 교육, 문화 및 기타사회서비스 행정, 산업진흥행정, 정부기관 일반 보조행정, 외교, 국방, 공공질서 및 관련사무를 수행하는 각 부, 처, 청, 사무소 등이 포함된다.

o 사회보장행정

사회보장사무란 근로능력이 없거나 소득결손 등을 보상하기 위한 이전지출 사무를 말하며, 질병, 사고 및 실직, 퇴직 및 기타 수입결손을 유발할 수 있는 명백한 위험에 대한 사회보장사무를 포함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o 수용 또는 비수용 복지시설 운영 및 기타 사회사업 활동 (85)

o 일반 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사무를 제외한 특정산업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은 그 운영하는 산업활동 내용에 따라 운수, 통신, 교육, 보건, 생산, 시장 및 금융기관의 운영 등의 특정 산업에 각각 분류

중분류 7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대분류 80. 교육서비스업

1. 교육서비스업

이 대분류에는 교육수준에 따른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수준의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및 기타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 초등 교육기관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 고등 교육기관

전문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 성인 교육 및 기타 교육기관

성인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특수 교육과정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특수 교육기관, 외국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일반 또는 전문 강습소 및 개인 교습소 등이 포함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 재활원 직업교육 서비스 (85)

○ 골프 및 기타 체육학교, 레크레이션 관련 교육 (92)

○ 개인 가정에 고용되어 있는 가정 교사 (95)

중분류 80. 교육서비스업

유아교육기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등 국·공·사립 및 주·야간 교육기관과 성인교육 및 기타 교육기관의 서비스활동을 말한다. 교육이외의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에서 자체 직원의 훈련을 위한 훈련기관으로서 독립적이고 계속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여기에는 국민학교 및 직업훈련을 위한 학원, 특수교육기관, 개인 교습소 등이 포함된다.

대분류 N.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의료업, 수의업과 사회복지사업 활동이 포함된다.

○ 의료업

사람의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의료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포함된다.

○ 수의업

동물질병의 예방, 치료 및 수의학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

아동, 노령자, 장애인 등과 같이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비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용복지시설 또는 비수용복지기구를 말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 치과의사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인조치아 및 보철물의 생산활동 (33)

○ 보건소 및 검역소의 활동 (75)

○ 사회보장활동 (75)

중분류 8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대분류 0.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 개 요

이 대분류에는 공공, 사회 및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 회원단체,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서비스, 세탁, 이·미용, 강의 및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0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분뇨, 오수 및 하수처리, 일반 또는 산업폐기물의 수집처리, 옥외 및 거리 청소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0 회원단체

회원 상호간의 복지증진과 특정 목적 실현을 위하여 조직된 각종 회원단체를 말하며, 산업, 노동 및 전문가 단체 또는 조합, 연합회 및 지부, 종교, 정치 및 기타 회원단체가 포함된다.

0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서비스업, 영화제작, 보급 및 상영, 방송, 연극, 음악 및 기타 예술활동,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유흥, 공연, 연예활동, 뉴스제공, 도서관, 자료실, 박물관 및 기타 문화서비스, 운동 및 기타 오락 관련서비스업 등이 포함된다.

0 기타 서비스업

세탁소, 이·미용, 강의 및 관련서비스,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개인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0 농작물 소득 및 방제 대리 활동 (01)

0 레코드 및 기타 기록 매체 출판 (22)

0 오디오 및 비디오 필름원단의 복제 생산 (22)

0 영화제작을 위한 배경설비, 영화장비, 스튜디오 설비, 영화의상 등의 임대

활동 (71)

- 보트 및 오락장비 임대활동 (71)
- 건물 및 설비의 청소, 소독 대리활동 (74)
- 영화상영용 및 방송용 이외의 사진촬영 및 필름처리 활동 (74)
- 연예인 대리 활동 (74)
- 개인 가정에 고용된 가사서비스 종사자 (95)
- 회원단체에 의한 출판, 교육, 금융 및 기타 특정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따라 각각 분류

중분류 90.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가정, 상업 및 산업단위 또는 공공장소로부터 폐기물, 쓰레기, 오물 등을 수집·수송하고 이를 소각 및 기타 방법으로 처리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도관 형태의 하수수거조직, 배수로 및 기타 방법으로 분뇨, 하수를 수집, 처리하는 활동과 옥외 및 거리청소, 보도, 주차장, 도로 또는 활주로의 제빙, 제설작업, 물뿌리기 등을 포함한다.

< 제 외 >

- 농업활동에 관련된 해충구제 활동 (01)
- 재생용 쓰레기 및 폐품처리 활동 (37)
- 집수, 정수, 급수 등의 수도사업 (41)
- 하수시설의 건설과 수리활동 (45)
- 건물청소와 소독 및 구충활동 (74)

중분류 91. 회원단체

중분류 92.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산업

중분류 93. 기타 서비스업

대분류 P. 가사 서비스업

개인 가정에 고용된 각종 가사 담당자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 < 포 함 > —

- 개인 가사서비스 (가정에 고용된)
-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참모, 개인비서, 집사, 운전자, 정원관리원, 가정교사 (가정에 고용된)

— < 제 외 > —

- 인력을 공급, 감독하는 사업체 (74)
-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경영단위는 그 주된 활동 내용에 따라 분류

대분류 Q.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 아주기구, 구주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유럽공동체, 국제대사관, 기타 외국지역단체 등의 공무를 수행하는 국제 및 외국기관을 말한다.

— < 제 외 > —

· 해외 및 국제기구 사무처 또는 해외에 주재하는 외교 및 영사 업무의 관리와 운영 (75)